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원시설의 유형에 파크골프장 명시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32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원시설의 유형에 파크골프장 명시(안 제2조제4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3. 20.

다. 회 부 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Ⅲ. 검토의견

1. 공원시설의 유형에 파크골프장 명시(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테니스장, 수영장, <u>궁도장</u> 등 운동시설 바. ~ 카. (생략) 5.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u>궁도장, 파크골프장</u> 등----- 바. ~ 카.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공원시설로 정의하면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의 유형으로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운동시설의 유형으로 ‘파크골프장’을 명시하려는 것임.

파크골프장은 저렴한 비용과 쉬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최근 중장년층의 이용 수요가 급증한 시설로, 개정안은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운동시설의 상세 유형 】

법 령	구 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원시설	
	4. 운동시설	가. 「 <u>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u>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u> .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체육시설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파크골프장 , 풋살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다만, 이 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운동시설의 상세한 유형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년 6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75호, 2024. 6. 18. 개정·시행)되어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¹⁾의 종류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바, 파크골프장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도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도시공원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므로, 조문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